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919

발의연월일: 2022. 3. 22.

발 의 자: 박홍근 · 김주영 · 천준호

우원식 • 이동주 • 김성환

김원이 • 전용기 • 이형석

김성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젊은 정치인의 양성은 정치권의 오래된 과제로서 정당 차원에서 인 재 발굴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은 청년 정치의 저변을 확대하기에 여전히 미진한 상황임.

특히 대통령선거의 경우 3억원, 광역단체장 5천만원,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천5백만원 등 고액의 기탁금과 반환 기준은 소득과자산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이 되어 자력으로 제대로된 선거운동을 펼치기 어렵고 젊은 세대의 정계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에 해당하는 34세 이하의 사람이 예비 후보자를 포함하여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의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을 절반으로 인하하 고 기탁금의 반환요건도 득표율이 10% 이상인 경우 전액, 5% 이상 1 0% 미만인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%를 반환하도록 대폭 완화하여 젊 은 세대의 진입 통로를 넓히고자 함(안 제56조제1항, 제57조제1항제1 호 및 제60조의2제2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다음 각 호의 기탁금"을 "다음 각 호의 기탁금[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선거일 현재 청년(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. 이하 제57조제1항 제1호에서 같다)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]"으로 한다.

제57조제1항제1호가목 중 "100분의 15 이상"을 "100분의 15 이상(후보자가 선거일 현재 청년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)"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"을 "1 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(후보자가 선거일 현재 청년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)"으로 한다.

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"을 "다음 각 호의 기탁금[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선거일 현재 청년(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을 말 한다)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]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) 제56조제1항, 제57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아 정 | 제56조(기탁금) ① -----제56조(기탁금)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-----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[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사람이 선거일 현재 청년(「청 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 년기본법 | 제3조제1호 본문에 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예비후 따른 청년을 말한다. 이하 제57 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 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)인 경 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 금액]----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략)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생 략) 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 第57條(寄託金의 반환 등) ① 관 |第57條(寄託金의 반환 등) ① ---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 탁자에게 반환한다. 이 경우 반 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한다.

- 대통령선거, 지역구국회의원
 선거,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
 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
 거
 - 가.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 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 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 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 액
 - 나.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
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
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
 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
 해당하는 금액

다. (생략)

- 2. (생략)
- ② ~ ⑤ (생 략)
- 제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 ① 제60 (생 략) ① (현

| 1 |
|-----------------------|
| |
| |
| |
| 가 |
| |
| <u>100분의 15 이상(후보</u> |
| 자가 선거일 현재 청년인 |
|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|
| 100분의 10 이상) |
| 나 |
|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|
| 15 미만(후보자가 선거일 |
| 현재 청년인 경우에는 유 |
| 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|
| 이상 100분의 10 미만) |
| |
| 다. (현행과 같음) |
| 2. (현행과 같음) |
|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|
| 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 ① |
| (현행과 같음) |
| ② |
| |
| |

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 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선거일 현재 청년(「청년기본법」 제3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 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을 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말한다)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 0에 해당하는 금액]-----

- 1. ~ 3. (생 략)
- ③ ~ ⑫ (생 략)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③ ~ ② (현행과 같음)